

경인지방병무청 청원경찰(대체인력) 채용 공고

경인지방병무청에서는 청원경찰(대체인력)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8월 24일
경인지방병무청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선발예정 인원	근무기간	근무기관
청원경찰 (대체인력)	1명	'26. 11. 5.(목) ~ '27. 9. 30.(목)	경인지방병무청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 경찰청 임용승인 일정에 따라 임용 시기 변경 될 수 있음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담당 업무
청원경찰	○ 청사 방호·경비 및 시설 장비 보호 ○ 방문 민원인 안내 등 청사 내 질서유지 ○ 병역판정검사장 질서유지 ○ 청사 경비 목적 차량통제 및 관리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및 제4조(임용방법 등)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및 제5조(임용승인신청서 등)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및 제33조(결격사유)

4 응시 요건

가. 공통요건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직선거법 제266조, 정치자금법 제57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세부규정은 ‘붙임 1’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청원경찰법 제10조6에 따른 당연퇴직(60세)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신체요건(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 공무원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 결과로 확인

다.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 직무관련 기관에서 동일분야 직무 경력 근무기간별 차등 배점

- ❖ 관련 직무분야 : 경찰, 청원경찰 및 경비·방호업무(보안·경비업체 등)
- ❖ 관련 기관 : 경찰청, 전문경비업체, 민간전문기관 등을 말하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기관은 정상적으로 등록(사업자등록)된 기관을 의미
- * 개인사업자 경력 제외

● 무도단증 : 무술관련 자격증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에서 발급된 것에 한함

- ❖ 인정 무도단체 :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 무도단증의 단수 산정은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종목에서 단수가 높은 것으로 인정

● 체력 검증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에 따른 차등 배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제출서류 : '국민체력100'체력인증서*(원본 또는 사본)
 -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력인증 기관(지역별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발급한 체력인증서
 - * 인증일자가 1년('25. 9. 4. ~ '26. 9. 3.) 이내인 경우만 인정
 - *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만 인정

● 정보화 자격증 : 차등배점,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만 인정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1급 > 2급

- ❖ 정보화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프로그래밍기능사(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 2012.1.1. 이후 워드자격증 취득자는 1급 자격증으로 인정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공 통 】

-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신체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 공통 및 응시자격요건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으로 판단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경력, 자격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자격증의 유효기간 경과 등 효력이 상실한 자격증 미인정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경력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에서의 경력만을 의미
-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 증명서를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 근무부서, 직책,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시간(주 40시간 등), 상근/비상근 여부, 담당자 연락처 등
- * **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명기 제출
- * 증명서류 및 보완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 해당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 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과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첨부 가능
- 근무경력자 : 4대 보험 납부 이력 등 실제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 따라 계산
 - 2개 이상의 경력은 별도 계산하여 합산

5 보수 수준 및 근무시간

구 분	내 용
보 수	■ 기본급 월 2,133,000원(1호봉 기준, 세액공제 전) * 청원경찰법 제6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1(시행 2026.5.19.) - 정근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별도 지급
근무형태/시간	■ 주 5일 (월~금),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 * 근무시간 : 09:00 ~ 18:00 * 상기 근무시간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시험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자기소개서, 업무수행계획서, 직무분야 실무경력 등)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선발** * 선발범위 내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 처리(선발예정인원초과)
- < 서류전형 평가기준 >

평정 요소	평가 기준
발 전 가 능 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 성장가능성 등 평가
업 무 적 합 성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 근무경력 등 적합성·연관성 평가
우 대	직무관련 실무경력, 체력인증서, 무술관련 자격증, 정보화 자격증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청원경찰 으로서의 자세 등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각 면접위원이 4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 ① 소통·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 ② 헌신·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 ③ 창의·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 ④ 윤리·책임 : 청원경찰로서 윤리의식과 책임성

•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회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회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중’, ‘하’의 개수에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7 시험 일정

구 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 정	'26. 8. 24.(월) ~ 9. 3.(목)	'26. 9. 1.(화) ~ 9. 3.(목)	'26. 9. 18.(금)	'26. 9. 30.(수)	'26. 10. 14.(수)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인지방병무청 누리집,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 합격자 발표 외 별도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 면접시험 20분 전까지 도착 하여야 하며, 미도착 시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9. 1.(화) ~ 2026. 9. 3.(목), 3일간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 응시서류 봉투 겉면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표기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자의 휴대폰 SMS로 통보예정
 -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우1644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경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 △ 방문 접수 장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경인지방병무청
 - △ 전자우편 접수 이메일 주소
 - 채용담당자 이메일 주소 : ioou1001@korea.kr/ 문의전화: 031-240-7224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 분	서 류	비 고
공통사항 (필수제출)	서류전형 증빙자료 제출서류 총괄표 1부	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없음	별지서식 제2호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9호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관련 직무분야 주요 경력 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경력(재직) 증명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무도단증 사본 1부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원본 또는 사본) 1부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9 안내 및 참고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원서접수 시 제출하지 않은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은 우대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기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경력사항 및 관련 자격사항 등 이력서 작성 시 허위 기재를 한다든지, 서류 위변조 사항 적발 시 서류전형 합격이 취소되는 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일정기관 보관됩니다.
- * 반환 기간 : 2026. 10. 15. ~ 2027. 1. 4.
-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직장으로 경력 확인 요청문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른 부정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한가지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경인지방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31-240-7224)로 연락 바랍니다.

2026. 8. 24.

경 인 지 방 병 무 청 장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등)

- ①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266조(결격사유)】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選舉運動)를 할 수 없는 者)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學校의 長의 任免)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 ③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57조(결격사유)】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될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선발예정 인원	근무예정기관
청원경찰	1명	경인지방병무청
주요 업무	○ 청사방호 · 경비 및 시설 장비 보호 ○ 방문민원인 안내 등 청 내 질서유지 ○ 병역판정검사장 질서유지 ○ 청사 경비 목적 차량통제 및 관리	
필요 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 마인드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 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직렬별 역량) 분석·기획, 전략적 사고, 창의력, 전문성, 정보화능력 등	
필요 지식	○ 청원경찰 직무수행을 위한 청원경찰법 등 관련 법규의 이해 ○ 청사 및 시설물 방호 등 직무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경비 지식	
필수요건	※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직선거법 제266조, 정치자금법 제57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인 사람 ○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공무원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 결과로 확인 ○ 청원경찰법 제10조6에 따른 당연퇴직(60세)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남성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직무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무술 유단자증,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 및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 붙임의 「제출서류 목록」 과 함께 순서대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자필 서명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A4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필수서류	A4 4매 이내로 작성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 필수서류	자필 서명 필수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9호) : 필수서류	자필 서명 필수
7.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 해당자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주당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이력서 작성 시 허위기재, 누락,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작성 ○ 추후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 허위기재한 경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 되어 서류전형 합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8. 관련 직무분야 주요 경력 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해당자	
9. 주민등록초본 1부 : 필수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출력
10. 무도단증 1부 : 해당자	사본 제출
11.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 1부 : 해당자	원본 또는 사본 제출
12. 정보화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	

<별지서식 제1호>

제출서류 목록

성 명	채용분야
	청원경찰

■ 제출서류(총괄표)

- 제출유무란 해당란에 “√” 표시, 번호순으로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 제출

목 록	제출여부	
① 응시원서(필수)	☐ 제출	☐ 미제출
② 이력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⑤ 관련 직무분야 주요 경력 요약서 1부(해당자)	☐ 제출	☐ 미제출
⑥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 - 각 기관발행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제출	☐ 미제출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⑧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필수)	☐ 제출	☐ 미제출
⑨ 주민등록초본 1부(필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제출	☐ 미제출
⑩ 무도단증 사본 1부(해당자)	☐ 제출	☐ 미제출
⑪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원본 또는 사본) 1부(해당자)	☐ 제출	☐ 미제출
⑫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제출	☐ 미제출

2026. . .

성명 : (서명)

경인지방병무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2호>

(앞 면)

응시원서 (원본)

경인지방병무청장 귀하

본인은 경인지방병무청 청원경찰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원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청원경찰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청원경찰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시험당일은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③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④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⑤ 정부수입인지 : 해당 없음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청원경찰	성명	
-------	----------	-------	------	----	--

2. 응시자격(필수요건)

시 력	(나안 / 교정) 좌: 우:
--------	-----------------------

3. 우대요건(해당자만 작성)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 (○○과)	16.1.1 ~ 17.11.5. (22개월 5일)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질병휴직)	과장 (4급)	상세하게 작성	상근/비상근 (주 40시간 근무)

무 도 단 증 명	무도단증명	단수번호	단수(급수)	발급(취득)일자	발급기관명

이력서 작성요령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관련 근무 경력을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 경력(재직)증명서에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미기재 되어 있을 경우,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자료(인사기록카드 등) 증빙 자료 첨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근무기관, 근무기간, 근무월일수,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근무기간 및 근무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개월 및 일 단위로 기재
 - * 예시) 2015. 1. 1. ~ 2019. 2. 15.(38개월 15일)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상근*/비상근 여부로 표시하고, 주당 근무시간 표시(예: 상근 주40시간, 비상근 주3시간),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 상근 :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근무일마다 출근, 일정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
 -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자격증 우대요건에 해당되는 정보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프로그래밍기능사(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2급 이상) 및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2012. 1. 1.이후 워드 자격증 취득자는 1급 자격증 인정)
 - *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건만 인정
 -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화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착오기재,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추후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 허위기재한 경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 되어 서류전형 합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서명 또는 인		응시직급 및 분야	청원경찰
-----	--	------------	--	-----------	------

◎ 자기소개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아래항목이 포함되도록 작성, 필요 시 추가사항 기재 가능

① 지원동기 및 본인소개

* 공직자 지원동기, 생활신조, 가치관, 성격 장·단점 등

② 직무분야에서의 주요 실적(성공사례) 및 경력개발

* 팀웍·리더쉽·협상능력 발휘로 실적 달성 사례, 직무관련 자기개발 등

③ 소속 구성원(또는 고객)과의 관계

* 직장, 학교 등에서 동료와의 갈등 및 극복사례, 불만민원 처리 등 고객서비스 사례 등

④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

*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직자상, 앞으로의 각오 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 용지 좌·우·상·하 여백은 각각 20mm,
머리말·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서명 또는 인		응시직급 및 분야	청원경찰
----	--	------------	--	-----------	------

◎ 직무수행계획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A4용지 4매 이내로 작성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아래항목이 포함되도록 작성, 필요 시 추가사항 기재 가능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분야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① 직무에 대한 이해, 소견 및 응시 취지
-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 ③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

- 분량은 A4용지 4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 용지 좌·우·상·하 여백은 각각 20mm,
머리말·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

관련 직무분야 주요 경력 요약서

□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근무경력)

근무기관 (부서 포함)	근무기간	근무연월일 수	직위(급)	주요업무실적	근무형태
1. ○○○○ (팀)	2019.X.X ~ 2015.X.XX	XX년XX월XX일	주임		주40시간
	2015.X.X ~ 2014.X.XX	XX년XX월XX일	과장		주35시간
2. △△△△ (팀)	2014.X.X ~ 2012.X.XX	XX년XX월XX일			주25시간
	2012.X.X ~ 2011.X.XX	XX년XX월XX일			
3. △△△△ (팀)	2010.X.X ~ 2007.X.XX	XX년XX월XX일			
총 경력		○○년○○개월 ○○일			

【작성요령】

- ① 담당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사실여부 확인 예정
- ②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할 것
※ 경력(재직)증명서에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미기재되어 있을 경우,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자료(인사기록카드 등) 증빙자료 첨부**
- ③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2월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④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⑤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기간을 별도 기재**
- ⑥ 주요수행업무 및 업무실적은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 ⑦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예-계약직으로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명확한 경우, 경력증명서 외에 관련 직무와 관련된 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이 경우 심의를 통해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인/서명)

경력 증명서

기 관 현 황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기관형태	☐ 국가 혹은 지자체 ☐ 민법에 의한 재단·사단법인 ☐ 개별법에 의한 법인체		☐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의원 등 ☐ 공사 혹은 공단 ☐ 기타()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근 무 경 력						
입사일자	년 월 일	총 근무년간	년 월 일	고용형태	정규/비정규	
퇴사일자	년 월 일			근무형태	상근/비상근	
퇴직사유	사유 기재			근무시간	주 ○○시간	
근 무 세 부 내 역						
부서명	직급 (직위)	근무기간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술)		
		~				
		~				
상 별 사 항	포 상			징 계		
	년 월 일	종류	기관명	년 월 일	종류	기관명
				담당자	(인)	
				확인자	(인)	
				문의전화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

직 인

※ 기관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발급 담당자,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시행하는 청원경찰 채용 응시자로서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원경찰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정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경인지방병무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청원경찰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청원경찰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에 따른 경력·자격증,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등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청원경찰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청원경찰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원경찰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경인지방병무청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청원경찰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청원경찰 채용 관리 (자격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경찰청	청원경찰 채용 및 관리	청원경찰 채용 승인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109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경인지방병무청장 귀하

<별첨 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희망자에 한함)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응시)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휴대전화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인지방병무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 2> 우대요건(무도단종) 인정 무도단체 현황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2)**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국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 「대한크라쉬연맹」은 '23. 12. 3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56)**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중앙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제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유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유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중앙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중앙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대한특공무술중앙협회	대한크라브마가협회	

※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 대한합기도연합회 - 대한합기도유술협회 - 세계태권무도연맹 - 한국해동검도연합회 - K3세계국무도총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협회 -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는 '25. 2. 6.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

택견보존회
